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22호 2019. 9. 2(월)

규 칙

장수군 규칙 제 1140호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1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792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
 장수군 공고 제 2019 - 795호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장수군 공고 제 2019 - 801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7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822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3, 3-4호)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55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규칙 제1140호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장수군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수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수군 1388청소년지원단장 및 학교지원 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장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의 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6. 학부모대표

7.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및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규정(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 마. 비밀누설금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장수군 공고 제2019-79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장수군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사유

현재 장수군 민간위탁 조례의 경우 민간위탁 시 사전검토사항이나 사후관리 방안 등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체가 어려운 상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신설(안 제5조)
- 나.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신설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
 -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안 제11조 및 제12조)
 -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3조)
- 다. 사후 관리 ·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방안 신설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9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15조)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해지사유로 명시(안 제23조)

3. 관계법령 (붙임)

-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행정지원과장)

2) 팩 스 : 063-350-5705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전화063-350-21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

-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료 된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사전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적정 여부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②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장수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22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 등) ①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6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자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 · 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

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 · 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 · 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 · 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 ·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 ·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 · 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 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장수군 공고 제2019-795호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 (제4조)
- 나.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제4조의 2)

다.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제4조의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 2) 전 화 : 063-350-2502
- 3) 팩 스 : 063-350-5717
- 4) E-mail : jhky201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장수군 홈페이지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안전재난과(063-350-2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을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내용:
타 시 · 군 · 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내용: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시고이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210mm × 297mm [백색지 (80g/m²) 또는 중진지 (80g/m²)]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장수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장수군수가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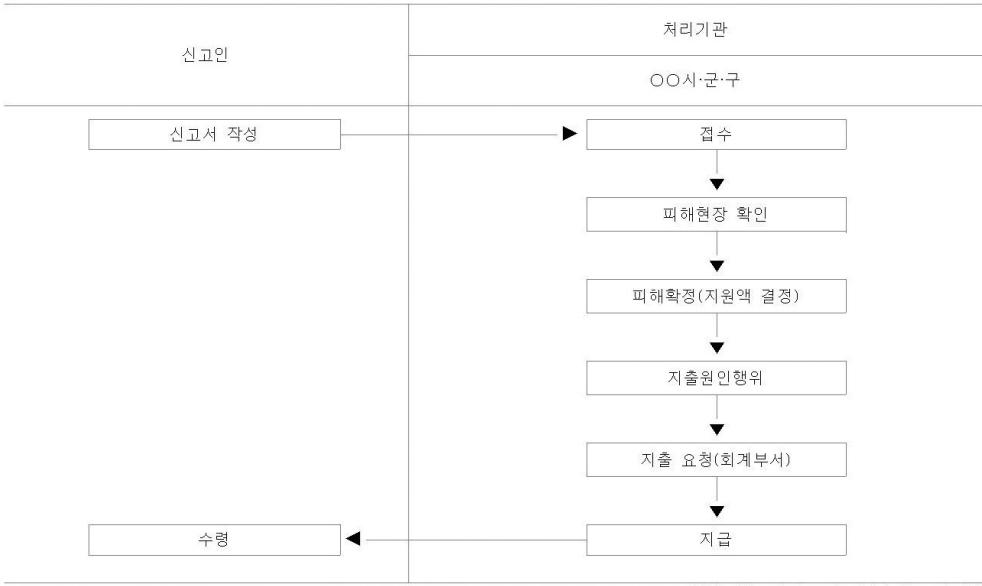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경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화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경(안)
<p>제3조(지원 결정)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u>(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p> <p>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자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2. (생 략)</p> <p>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의</u>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p>	<p>제3조(지원 결정) ① -----</p> <p>-----</p> <p>-----</p> <p>-----</p> <p>-----</p> <p>-----</p> <p>-----</p> <p>-----</p> <p>1. -----</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p> <p>-----</p> <p>-----</p> <p>② -----</p> <p>---에 대한 -----</p> <p>-----</p> <p>제4조(지원 기준) ① -----</p> <p>-----</p> <p>-----</p> <p>위하여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현 행	변경(안)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신 설〉</p>	<p>② -----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p> <p>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p> <p>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p> <p>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 ·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신 설〉</p>	<p>제4조의 2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군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p>
<p>〈신 설〉</p>	<p>제4조의 3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4조의 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p>	<p>제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 -----원인제공자-----</p>

현 행	변경(안)
<p>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p> <p>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 이장 · 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p> <p>⑥ (생 략)</p> <p>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p>	<p>----- -----.</p> <p>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 치료비 지원 ----- 피해주민으로부터 -----.</p> <p>② ----- 피해주민은 ----- ----- -----.</p> <p>③ ----- 피해주민이-----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피해주민이 ----- ----- ----- 피해주민-----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방법) ----- 피해주민----- ----- 피해주민----- -----</p>

현 행	변경(안)
<p>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 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p>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u>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u>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u>재원을</u>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 ----- 피해주민 ----- ---.</p> <p>제9조(환수) ① ----- ----- <u>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u> ----- ----- -----.</p> <p>제10조(재원의 확보) ----- ----- <u>재원(財源)을</u> -----.</p>

장수군 공고 제2019-801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 예고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이 개정 시행규칙안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선수 등급 조정 등을 통해 우수선수 영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근무상한연령 상향, 수당, 훈련비, 포상금 현실화를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높여 장수군청 탁구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근무상한연령 조정(안 제20조)

- 1) 감독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상향
- 2) 선수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상향

나. 선수 등급 및 배점 기준 조정(안 별표2, 별표3)

- 1) 선수등급구분 기준 5등급(S,A,B,C,D)에서 4등급(S,A,B,C)으로 변경하고 등급에 따른 점수와 신규채용대상자의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함
- 2)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 중 경력과 경기력, 감독평가의 배점을 조정하고 훈련평가 점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다. 단원 영입비, 연봉, 수당, 훈련비, 포상금 등 조정

(안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 1) 우수선수 영입비 및 연봉을 선수 등급 변경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변경
- 2) 수당 중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및 훈련비 중 목욕비를 삭제하고 식비, 숙박비, 간식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 3) 포상금 지급기준 중 개인전을 단체전과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제2항(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부서 협조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4. 추진일정

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19. 8월

나. 시행규칙안 종합검토(입법예고 의견제출사항 등 반영) : 2019. 9월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9월

마. 시행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19. 9월

5. 의견제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638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
(전화 063-350-2336, 팩스 063-350-571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 우성기
(전화 : 063-350-2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 칙 일부개정(안)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만 55세”을 “만 60세”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 중 “만 35세”을 “만 40세”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1. 선수 등급구분(제6조제2항 관련)

구 分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점	95점 이상	94점~90점	89점~80점	79점이하

2. 선수 배점구분(신규채용 대상자)

구 分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 10 - 5년 미만 : 5 	
경기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시 · 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장래성 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별표 3】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성명	등급	총점 (100점)	경기 성적 (50점)	훈련평가 (20점)		경력(10점)		감독 평가 (20점)	비고
				훈련 성실도	전술 이해도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배점	100점	50	10	10	10	5	20		

○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위	2위	3위	등외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50점	45점	40점	15점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35점	30점	25점	
전국규모 대회	25점	20점	15점	
시·도 대회	15점	10점	5점	

– 부상 등으로 1년간 출전한 대회 수가 2개 이하일 경우, 전년도 입상 성적 중 최고성적 1개를 합산한다.

○ 훈련평가(훈련성실도, 전술이해도), 감독평가 :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감독이 부여

인원	상(10점)	중(9점 ~ 8점)	하(7점이하)
7명	2명	3명	2명
6명	2명	3명	1명
5명	1명	3명	1명
4명		절대평가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급수	영 입 기 준	지 급 액
S등급	총점 95점 이상	70,000 이하
A등급	총점 90 ~ 94점	50,000 이하
B등급	총점 80 ~ 89점	35,000 이하
C등급	총점 79점 이하	25,000 이하

※ 지급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표 5】

감독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分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감독			60,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0,000 이하	
	A급	90 ~ 94	44,000 이하	
	B급	80 ~ 89	38,000 이하	
	C급	79 이하	32,000 이하	

※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표 6】

감독 및 선수 수당(제9조 제5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정기 수당	감 독	4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선 수	300,000	
명절 상여금	감 독	800,000	※ 설,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연 2회)
	선 수	600,000	

【별표 7】

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식 비	간식비	비 고
25,000	20,000	5,000	1인 기준

※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소집훈련 중인 선수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임	비고
80,000	10,000	30,000	30,000	10,000	실비	1인 기준

※ 감독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分		1위(금)	2위(은)	3위(동)	비 고
올림픽	단체전	10,000	7,000	5,000	
	개인전	10,000	7,000	5,000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7,000	5,000	3,000	
	개인전	7,000	5,000	3,000	
아시아경기 대회	단체전	6,000	4,000	2,000	
	개인전	6,000	4,000	2,000	
국제대회 세계탁구연맹 주관대회 아시아탁구연맹주관대회	단체전	3,000	2,000	1,000	
	개인전	3,000	2,000	1,000	
기타 국제대회 및 국내1급 대회	단체전	2,000	1,500	1,000	
	개인전	2,000	1,500	1,000	
국내2급 대회	단체전	1,000	700	500	
	개인전	1,000	700	500	

※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많은 금액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같게 지급한다.

※ 국내1급 대회 :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오픈대회(왕중왕전, 챔피언전등), 대통령배 전국탁구대회, 전국체전, 회장기실업연맹전

※ 국내2급 대회 : 춘계·추계 회장기 대회(시·도 대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호와 같다.					제20조(근무상한연령) ① -----.																																				
1. 감독 : 만 55세 2. 선수 : 만 35세 ② · ③ (생 략)					1. ----- 60세 2. ----- 40세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1. 선수 등급구분(제6조제2항 관련)					1. 선수 등급구분(제6조제2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S등급</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r> </thead> <tbody> <tr> <td>총 점</td><td>96점 이상</td><td>95점~90점</td><td>89점~80점</td><td>79점~60점</td><td>59점미만</td></tr> </tbody> </table>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점	96점 이상	95점~90점	89점~80점	79점~60점	59점미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S등급</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r> </thead> <tbody> <tr> <td>총 점</td><td>95점 이상</td><td>94점~90점</td><td>89점~80점</td><td>79점이하</td></tr> </tbody> </table>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점	95점 이상	94점~90점	89점~80점	79점이하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점	96점 이상	95점~90점	89점~80점	79점~60점	59점미만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점	95점 이상	94점~90점	89점~80점	79점이하																																					
2. 선수 배점구분(신규체용 대상자)					2. 선수 배점구분(신규체용 대상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배점</th><th>기 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경 력</td><td>20</td><td>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 3년 미만 : 5 </td><td></td></tr> <tr> <td>경기력</td><td>60</td><td> <input type="radio"/>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td><td></td></tr> <tr> <td>장래성 등</td><td>20</td><td>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td><td></td></tr> </tbody> </table>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20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 3년 미만 : 5		경기력	60	<input type="radio"/>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장래성 등	20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배점</th><th>기 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경 력</td><td>10</td><td>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5년 이상 : 10 - 5년 미만 : 5 </td><td></td></tr> <tr> <td>경기력</td><td>70</td><td> <input type="radio"/>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td><td></td></tr> <tr> <td>장래성 등</td><td>20</td><td>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td><td></td></tr> </tbody> </table>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5년 이상 : 10 - 5년 미만 : 5		경기력	70	<input type="radio"/>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장래성 등	20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20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 3년 미만 : 5																																							
경기력	60	<input type="radio"/>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장래성 등	20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input type="radio"/>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5년 이상 : 10 - 5년 미만 : 5																																							
경기력	70	<input type="radio"/>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사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점, 3위 15점																																							
장래성 등	20	<input type="radio"/>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현 행			개 정 안																																																																											
<p>【별표 5】</p> <p>감독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p> <p>(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등 급</th> <th rowspan="2">등 급 점 수</th> <th colspan="2">연 봉</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하 한 액</th> <th>상 한 액</th> </tr> </thead> <tbody> <tr> <td>감 독</td> <td></td> <td></td> <td>37,000</td> <td>45,000</td> <td></td> </tr> <tr> <td rowspan="5">선 수</td> <td>S급</td> <td>96 ~ 100</td> <td>44,000</td> <td>50,000</td> <td></td> </tr> <tr> <td>A급</td> <td>90 ~ 95</td> <td>38,000</td> <td>44,000</td> <td></td> </tr> <tr> <td>B급</td> <td>80 ~ 89</td> <td>32,000</td> <td>38,000</td> <td></td> </tr> <tr> <td>C급</td> <td>70 ~ 79</td> <td>26,000</td> <td>32,000</td> <td></td> </tr> <tr> <td>D급</td> <td>69 이하</td> <td>20,000</td> <td>26,0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하 한 액	상 한 액	감 독			37,000	45,000		선 수	S급	96 ~ 100	44,000	50,000		A급	90 ~ 95	38,000	44,000		B급	80 ~ 89	32,000	38,000		C급	70 ~ 79	26,000	32,000		D급	69 이하	20,000	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p>【별표 5】</p> <p>감독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p> <p>(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등 급</th> <th rowspan="2">등 급 점 수</th> <th colspan="2">연 봉</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연 봉</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감 독</td> <td></td> <td></td> <td>60,000 이하</td> <td></td> </tr> <tr> <td rowspan="5">선 수</td> <td>S급</td> <td>95 ~ 100</td> <td>50,000 이하</td> <td></td> </tr> <tr> <td>A급</td> <td>90 ~ 94</td> <td>44,000 이하</td> <td></td> </tr> <tr> <td>B급</td> <td>80 ~ 89</td> <td>38,000 이하</td> <td></td> </tr> <tr> <td>C급</td> <td>79 이하</td> <td>32,000 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연 봉	비 고	감 독			60,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0,000 이하		A급	90 ~ 94	44,000 이하		B급	80 ~ 89	38,000 이하		C급	79 이하	32,000 이하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하 한 액	상 한 액																																																																										
감 독			37,000	45,000																																																																										
선 수	S급	96 ~ 100	44,000	50,000																																																																										
	A급	90 ~ 95	38,000	44,000																																																																										
	B급	80 ~ 89	32,000	38,000																																																																										
	C급	70 ~ 79	26,000	32,000																																																																										
	D급	69 이하	20,000	26,000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연 봉	비 고																																																																										
감 독			60,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0,000 이하																																																																											
	A급	90 ~ 94	44,000 이하																																																																											
	B급	80 ~ 89	38,000 이하																																																																											
	C급	79 이하	32,000 이하																																																																											
<p>【별표 6】</p> <p>감독 및 선수 수당(제9조 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급금액(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감 독</td> <td>400,000</td> <td rowspan="2">※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td> </tr> <tr> <td>선 수(훈련)</td> <td>30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감 독	4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선 수(훈련)	300,000	<p>【별표 6】</p> <p>감독 및 선수 수당(제9조 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급금액(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정기 수당</td> <td>감 독</td> <td>400,000</td> </tr> <tr> <td>선 수</td> <td>300,000</td> <td rowspan="4">※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td> </tr> <tr> <td rowspan="2">명절 상여금</td> <td>감 독</td> <td>800,000</td> </tr> <tr> <td>선 수</td> <td>60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정기 수당	감 독	400,000	선 수	3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명절 상여금	감 독	800,000	선 수	600,000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감 독	4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선 수(훈련)	300,000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정기 수당	감 독	400,000																																																																												
	선 수	3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명절 상여금	감 독	800,000																																																																												
	선 수	600,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일/원)					【별표 7】 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일/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th>식 비</th><th>간식비</th><th>목욕비</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20,000</td><td>10,000</td><td>5,000</td><td>5,000</td><td>1인 기준</td></tr> </tbody> </table>					계	식 비	간식비	목욕비	비 고	20,000	10,000	5,000	5,000	1인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th>식 비</th><th>간식비</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25,000</td><td>20,000</td><td>5,000</td><td>1인 기준</td></tr> </tbody> </table>				계	식 비	간식비	비 고	25,000	20,000	5,000	1인 기준											
계	식 비	간식비	목욕비	비 고																																	
20,000	10,000	5,000	5,000	1인 기준																																	
계	식 비	간식비	비 고																																		
25,000	20,000	5,000	1인 기준																																		
<p>※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소집훈련 중인 선수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소집훈련 중인 선수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th>일 비</th><th>식 비</th><th>숙박비</th><th>목욕비</th><th>간식비</th><th>운 입</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75,000</td><td>10,000</td><td>30,000</td><td>25,000</td><td>5,000</td><td>5,000</td><td>실 비</td><td>1인 기준</td></tr> </tbody> </table>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운 입	비 고	75,000	10,000	30,000	25,000	5,000	5,000	실 비	1인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th>일 비</th><th>식 비</th><th>숙박비</th><th>간식비</th><th>운 입</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80,000</td><td>10,000</td><td>30,000</td><td>30,000</td><td>10,000</td><td>실 비</td><td>1인 기준</td></tr> </tbody> </table>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 입	비 고	80,000	10,000	30,000	30,000	10,000	실 비	1인 기준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운 입	비 고																														
75,000	10,000	30,000	25,000	5,000	5,000	실 비	1인 기준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 입	비 고																															
80,000	10,000	30,000	30,000	10,000	실 비	1인 기준																															
<p>※ 감독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p>※ 감독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비고
올림픽	단체전	10,000	7,000	5,000	
	개인전	10,000	7,000	5,000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7,000	5,000	3,000	
	개인전	7,000	5,000	3,000	
아시아경기 대회	단체전	6,000	4,000	2,000	
	개인전	6,000	4,000	2,000	
국제대회 세계탁구연맹 주관대회 아시아탁구연맹주관대회	단체전	5,000	3,000	1,500	
	개인전	3,000	2,000	1,000	
기타 국제대회 및 국내1급 대회	단체전	5,000	3,000	1,500	
	개인전	2,000	1,500	1,000	
국내2급 대회	단체전	2,000	1,000	500	
	개인전	1,000	700	300	

*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많은 금액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함께 지급한다.

* 국내1급 대회

: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오픈대회(왕중왕전, 챔피언전등), 대통령배 전국탁구대회,
전국체전, 회장기실업연맹전

국내2급 대회 : 춘계추계 회장기 대회(시도 대회)

*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많은 금액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함께 지급한다.

* 국내1급 대회

: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오픈대회(왕중왕전, 챔피언전등), 대통령배 전국탁구대회,
전국체전, 회장기실업연맹전

국내2급 대회 : 춘계추계 회장기 대회(시도 대회)

장수군 공고 제 2019-822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3, 3-4호)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중로3-3, 3-4호))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장수군수

1. 실시계획 현황

가. 사업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960번지 일원 ((구)KBS장계소 부지)
 - 중로 3-3호, 3-4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도로/중로3-3, 3-4호)	도로개설 $L=204m, B=12m$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수군수

○ 주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3. 의견제출 : 사업 시행지구의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35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도로개설사업(중로3-3, 3-4호)-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2필지			21,445	2,595					
1	장계면 장계리	960	잡	3,441	458	장수군				중로3-3
					482					중로3-4
2	장계면 장계리	527-30	잡	5,109	500	장수군				중로3-3
					37					중로3-4
3	장계면 장계리	527-27	제	2,807	21	국(건설부)				중로3-3
4	장계면 장계리	527-55	잡	2,249	31	국(국토교통부)				중로3-3
5	장계면 장계리	871 871	천	1,421	6	국(국토교통부)				중로3-3
					127					중로3-4
6	장계면 장계리	872	제	417	64	국(건설부)				중로3-4
7	장계면 장계리	961	대	1,517	451	장수군				중로3-4
8	장계면 장계리	962	도	823	97	국(국토해양부)				중로3-4
9	장계면 장계리	963	잡	1,750	77	장수군				중로3-4
10	장계면 장계리	527-31	대	407	14	장수군				중로3-4
11	장계면 장계리	867	도	483	40	장수군				중로3-4
12	장계면 장계리	873	임	1,021	190	장수군				중로3-4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